



제42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설 〉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42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5.
3. 회 부 일 : 2025. 4. 16.

II. 제안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됨.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코인리딩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적인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도 코인리딩방의 불법적 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코인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약 7,000억원을 상회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고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행위규제로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표시 또는 광고 및 미실현 수익률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하며,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이용자 유의사항을 표시 또는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신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u>이용자의</u>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이용자 등의</u>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이란 <u>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2장의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u> <u>제9조의2(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신고)</u> ①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폐지한 경우</u> <u>우</u> 2. <u>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 3. <u>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u> ③ <u>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질서유지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에 대하여 영업내용 및 업무방법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u> ④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유사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u>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u>

현행	개정안
	<u>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u> 2. 제2항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6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4. 제9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2조제5호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따른 자문이나 조언을 받는 고객(이하 “자문고객”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부가

현행	개정안
	<u>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u>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이 조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⑦ <u>금융위원회는 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u>

현행	개정안
<신설>	보를 제공한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로 본다. 1.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가 제9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문고객 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3(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자문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자문고객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u> 2. <u>자문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u> 3. <u>자문고객으로부터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치를 받는 행위</u> 4. <u>자문고객에게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자문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가상자산,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u> 5. <u>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u> 6. <u>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가상자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u> ②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가상자산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u>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① · ② (생략) <u><신설></u>	<u>그 손실은 자문고객에게 귀속된다</u> <u>는 사항</u> 2. <u>정식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가상</u> <u>자산 유사자문업자이며 자금운용이</u> <u>불가능하다는 사항</u> ③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u> <u>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를 가상자</u> <u>산사업자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u> <u>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u> 2. <u>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u> <u>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u> <u>광고</u> 3. <u>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u> <u>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u> <u>하는 표시 또는 광고</u> 4. <u>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u> <u>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u> <u>기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 또</u> <u>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한 조언이</u> <u>다른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보다 유</u> <u>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u> 5. <u>그 밖에 자문고객 보호 또는 건전</u> <u>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u> <u>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u> 제19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u> <u>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현행	개정안
<신설>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③·④ (생략)	⑤·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並科)할 수 있다.	⑦ -----제6항까지에----- ----- ----- --.
⑥ (생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0조(몰수·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0조(몰수·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중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

현행	개정안
5. ~ 8.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2. <u>제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하나¹⁾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임.²⁾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고객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임.³⁾
- 당초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보았으나⁴⁾, 온라인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로 투자자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2024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있었음.
-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방향 채널⁵⁾의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조언을 하는 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주식리딩방⁶⁾이나 SNS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하여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방식은 투자자문업으로 구분하여 규율함.⁷⁾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6)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 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대일 방식의 차별화된 투자자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필요로 하는 등록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을 가능하다는 점, 금융투자업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코인리딩방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이와 관련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리딩방 등 온라인을 통한 불건전영업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정안 제2조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고객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의 가치나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정의 관련 입법례⁸⁾를 참고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제9조의2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금융위원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요건, 불수리 사유, 유효기간 등 신고제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 제9조의3은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자산의 보관 및 예치·대여·중개 금지, 수수료 외의 대가 수취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는 한편,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자금운용 불가 사실) 및 금지사항(손실보전·이익보장 오인,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는 주장 등) 등 광고에 관한 규제를 두려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⁹⁾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 개정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써 벌칙, 몰수·추징, 과태료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주식, 코인 등의 투자리딩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232건에서 3,300명을 검거(구속 734명)하였다고 밝혔는데¹⁰⁾, 이 기간 피해금액이 8,949억원에 달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규제공백을 해소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경찰청 보도자료,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현황 및 예방법 안내”, 2025. 2. 27.

○ 개정안은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에 대한 규제방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하게 규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는 자기자본, 인력요건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후 영업이 가능한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업자로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됨.¹¹⁾

○ 즉,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하여 유료 회원제로营业을 하는 자가주식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로서의 규제를 받게 되는 반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자로서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업무의 실질이나 투자자·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두 업종에 대하여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¹²⁾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영업형태(매매·교환·중개·보관 등)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도입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1) 개정안은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의 규제 수준을 투자자문업자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수준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음.

12) 다만, 이는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형태 세분화 및 영업형태별 규제의 미비로 인한 금융투자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간의 규제 수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데,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상자산 자문과 관련한 입법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